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별첨 7)

제 1 조

모든 인테리어공사는 관리사무소와 공사 전반에 대하여 도면제출 및 사전협의를 거친다.

제 2 조

공사설계시 건축법, 소방법, 전기기술기준 및 집합건축물 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저촉하지 아니 하도록 설계 한다.

제 3 조

2항과 더불어 기존 건물에 대한 민사 및 상관례에 따라 주변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공 한다.

제 4 조 (건축법 관련)

1. 입간판 설치 불가 및 외부돌출물 설치 불가
2. 경계구획의 변경 및 제거시 사전 법규사항 검토
 - 방화구획의 재구성 및 복원에 대한 사전 검토
 - 내력벽 및 주요 구조물의 관계 검토
 - 칸막이 등 재료에 대한 검토
3. 내부 설치물, 장비, 인원배치의 적정중량 검토 및 건물 적재하중과의 관계 검토
4. 일조권 및 건물 외부 미관 최대한 고려
5. 강화유리도어 공사에서 도어 신지 설치시 건물 바닥 슬라브에 손상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 제거 후 관리사무소 직원의 확인 필수
6. 공용부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것
7. 각종 전기 및 수도, 통신 공사로 인한 방화구획의 손상시 원상복구를 필히 하여야 할것.
8. 사무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출입문에 덧붙이기 공사를 하는 경우 돌출부위의 두께는 벽면에서 20cm 이내로 하여야 하며 천장부분 돌출부위의 두께는 최대 30cm이내로 하셔야 하며 좌우 옆으로의 넓이는 문을 완전히 개방하였을 때 방화문의 끝부분에서부터 최대60cm 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 5 조 (소방법 관련)

1. 당 건물은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상향에서 하향으로 변경시 드라이 펜 턴트형 헤드를 사용한다.
2. 소방헤드 이설시 :
헤드의 간격 - 2.3M로 규정(정방향 : 3M, 장방향 : 4.2M)
벽과 헤드의 간격 - 10cm 이하
헤드주의 반경 60cm 이상의 공간 확보
(60cm이내 다른 장애물이 없어야 함)

헤드 감열부 부식이나 도색이 되어 있나 확인

헤드가 수평이 맞나 확인

3. 경계구획 변경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드반경 확인(반경 2.1m 이내)

4. 칸막이 재료의 선택 : 불연재 이상(우레탄 판넬 이상)

5. 마감재의 선택

가) 도배지 : 방염도배지 사용(필증제출요망)

나) 도료 : 방염도료 사용(필증제출요망)

다) 목공작업시 : 석고보드 2 ply 이상 부착

라) 버디칼 : 불연 또는 방염재료로 제작된 버디칼 사용

6. 방화문에 스토퍼 부착 불가

7. 방화문의 도어체크 해체 불가

8. 소화기 비치 위치 확정

9. 피난통로 확보 및 피난경로 시전 수립

10. 자연광 차단실 설치시 유도등 추가 설치 할것.

11. 크린룸 설치시 통로유도등 추가 설치 할것.

12. 비상조명설비(비상등)를 삭제하여서는 안된다.

13. 비상상승설비를 삭제하여서는 안된다.

14. 공용부에 자재 및 적치물의 적재를 금한다.

15. 바닥면적이 33㎡(10평)이상인 구획에는 각 실마다 소화기를 1개씩 비치토록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사오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구입하여 용접이나 페인트 작업 등 화재의 위 험이 있는 공사에 적극 활용한다.

제 6 조 (전기기술기준 관련)

1. 세대메인분전반 용량 확인 : 전체부하합 검토

2. 각 부하별 차단기 용량 확인 : 차단기의 용량이 부하용량보다 커야한다.

3. 부하 분배를 적절히 하여 1개 회로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용부하와 간선의 용량 확인 : 간선의 용량이 부하용량보다 커야한다.

5. 간선의 재질은 FR-CV급 이상을 사용한다.

6. 차단기 및 부하의 연결시 말단은 터미널을 사용하여 너트조임한다.

7. 말단부위는 전계원화용 테이핑을 충분히 한다.

8. 전선관 및 전선의 포설은 곡률이 완만하게 포설한다. 90도이상

9. 천정배선의 경우 트레이 또는 전선관내에 포설하여야 한다.

10. 케이블도 8번, 9번항에 기준하여 시공한다.

11. 증설로 인한 간선이 공용부를 통과시 다 통신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한다.

12. 증설로 인하여 여러개의 분전반 사용시 전원분배 분전반을 필히 설치한다.

13. 증설분전반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공용부분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5. 냉난방기의 경우 별도 전원라인을 구성한다.

제 7 조 (기타)

1. 공용부 수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공용부 시설물을 훼손 또는 이동시키지 않아야 한다.

3. 공용시설물 출입시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용부 시설물 오손 및 훼손은 모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5. 4번항에 더불어 복도 및 화장실(바닥, 벽면 포함)의 오손 및 훼손시 관리사무소는 복도청소 와 왁스작업을 명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6.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폐기물은 인테리어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외부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협의 없이 무단배출의 적발시 관리사무소는 해당 폐기물의 주변 타 폐기물까지 소급적용 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할 수 있다.
7. 인테리어 시공사는 입주자의 장비 및 시설물을 외부에 설치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인지 및 계도 하여야 한다.
8. 당 건물은 특정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도시가스 연결공사는 반드시 유자격 업체에서 시공하며 삼천리 도시가스와 사전협의 시공한다.